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0조의 요약

- 자본거래항목의 손금불산입 : 잉여금처분액을 당연도 비용·원가·손실로 처리계상한 금액, 건설이자의 배당금(사업개시전 이익, 잉여금발생전에 배당하는 금액),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임.
- 잉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의 성과급 등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성과급,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방법의 성과급 및 주식기준보상금액, 근로자(임원제외)에게 결산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지급의 손금산입액 등만 : 손금산입함. 나머지는 손금부인

●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結算)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I. 잉여금처분의 손비계상액 (법 제20조제1호)

1. 잉여금처분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원리인 순자산증가설에서 손금이란 법인의 순재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나 법인의 과세이익인 자본지부금액, 즉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해도 손금불산입하는데 이는 순자산이 외부로 나갔다가

여도 감소는 아니고 법인내부에서 외부로의 위치변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궁극적으로 개인주주이익을 취하기 위해 설립되는데, 주주에 대한 배당은 잉여금에서 처분되는 것으로서 이 지급배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합병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법인의 준비금과 특별세무손금(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등)도 세무조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① 잉여금의 개념

법인의 자본지부총액 중 주주 등이 원칙적으로 불입한 금액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 하는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자본잉여금은 정상적 영업활동 이외의 자본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인데,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경영활동 성적이므로 주주 등에게 배분처분이 가능하다. 잉여금의 처분이란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이기는 하지만 이미 과세소득목적의 손익계산이 끝난 후의 확정된 자기자본을 내부유보에서 외부유출로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기간손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② 기업회계상의 잉여금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2.30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2.33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2.40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세부 내용 및 법령 등에 따

라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 본】**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외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9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외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외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③ **잉여금처분방식의 성과급도 손금불산입(종업원 제외)**

법인의 모든 사업상 비용이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의 이익을 배분하는 법적인 자격자는 주주이지만 법인 이익을 임직원이나 종업원 등에게 배분할 수도 있다. 종업원에 대한 보수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원가·비용·손금이지만 잉여금 처분결의 등 손익배분개념에 의한 상여·급여배분은 기간 손익대응계산에서 전년도 이익의 배분이므로 당기 이익과 대응되지 않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의 잉여금배분적 상여금은 직원들 급여라도 손금불산입함이 원칙이다. 즉, 결산반영에 의하여 적법하게 손비로 계상한 항목일지라도 그 지출의 원천이 과세소득 계산후의 이익처분에 의한 성질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익처분방법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증산층·서민보호대책으로 노사관계안정 및 성과급제도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주주배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이익금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손비인정하기로 개정되었다.

2. 종업원 지주제관련 주식성과금은 손금산입됨

(법 제20조제1호단서)

손비로 계상했다라도 잉여금처분개념이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데, 당기비용계상이건 잉여금감액계상이건, 전연도 잉여금의 처분개념을 손금에 계상한 것이면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잉여금의 처분감액개념이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성과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의 성과급지급액 및 주식기준보상금액, 종업원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불산입의 예외, 즉 손금산입한다. 이런 종류의 성과급을 당기손익 계정상 비용·원가로 회계처리계상반영하였다면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잉여금 혹은 당기잉여금의 감액개념으로 회계처리계상하였다면 일부러 손금산입 반영해준다.

① 우리사주조합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종업원 성과배분상여금 등 비용 인정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기주식지급 성과급,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취득후 조합원분배 성과급, 주식매수선택권 취득관련 차이지급금액 및 주식기준보상금액, 종업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당기 처분대상 잉여금처분으로 회계처리해도 손금비용으로 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계연구원해석(2001-KQA23)에서 임직원 상여금은 노사합의 성과배분 상여금도 당기비용 원가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이는 법인의 주식을 분산하고 종업원지주제도촉진을 위해 법인의 임직원 및 기타 성과급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 우리사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등과 같이 주식성과급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손금산입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삭 제 (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10. 2. 18 개정)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감 사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주식관련 성과급 지급의 회계처리와 세무반영사례

-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9,000원으로 취득(액면가 5,000원)
- (차) 자기주식 9,000원 (대) 현금·예금 9,000원
- ② 자기주식취득가 9,000원 중 액면가 5,000원은 직원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불입받으며, 액면가 초과액 4,000원(=9,000-5,000)은 과거잉여금의 처분으로 하여 직원에 대한 성과급처리하면서 주식지급함.

(차) 현 금	5,000원	(대) 자기주식	9,000원
잉여금	4,000원		

⇒ 잉여금감액처분액 4,000원을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해 주면서 직원에 대한 상여처분반영하고 근로소득합산함.

- ③ 자기주식 액면초과차액을 일부는 잉여금으로, 일부는 급여로 직접 비용처리 (과거 이익누적분과 당기근로제공소득을 구분함)

(차) 현 금	5,000원	(대) 자기주식	9,000원
잉여금	3,000원		
급 여	1,000원		

⇒ 잉여금 감액 3,000원을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하면서 상여처분 근로소득합산

- ④ ②, ③의 모든 경우 우리사주조합 귀속차익, 주식매입선택권부여 관련차익에 대해 근로소득과세 제외되는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3. 결산이익의 근로자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① 종업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약정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비인정한다.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임직원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하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에 비용처리되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조정에 의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실무상 99년 결산이익의 세무조정신고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

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99. 12. 31 신설)

② 임직원보수·상여금·성과금 등의 손금산입 방법론 요약

일반직원(근로자)의 급여와 상여금 및 성과금 등은 정관이나 규정에 관계없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결산반영((차) 급여·상여·성과금 ×××원/(대) 미지급상여금 등 ×××원)한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이렇게 결산상 비용이나 원가로 반영하지 않고 확정(확정예정)결산이익의 분배금 방식에 의한 이익처분적 상여금은 손금산입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99년 12월 31일의 시행령 개정으로 99년 결산분부터는 근로자에 한하여 이익처분방식의 성과금지급도 손금산입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99년중 근로자성과금 배분상여금지급서면약정(노사협의 혹은 사규 등)이 체결되어 있다면 99년 결산분부터 적용되도록 되었다.

임원(등기임원·비등기임원·실질적 임원 등 모두)은 원칙적으로 급여만 손금산입되며,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총 및 임원보수규정 등에 의해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이나 지급규정방법상의 계산금액범위내에서만 실제지급 혹은 지급약정시 손금산입된다. 그러니까 임원상여금 등 지급규정상의 한도초과액은 실제 지급되어도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이익처분방식의 성과배분상여금도 아무리 사전합의나 약정있어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원은 이익계산하여 경영성과를 처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은 배당금의 일종이고 따라서 손금산입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급 여	규정상여	규정초과상여	이익처분 성과배분상여금
일반직원	손금	손금	손금	규정합의 있으면 손금, 없으면 불산입
임 원	손금	손금	손금불산입	규정관계없이 손금불산입

③ 회계처리분개와 세무조정처리방법

◎ 00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 (안)의 분개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50,000,000원 (대) 미지급성과금 50,000,000원

- ◎ 99년 12월 31일의 세무조정계산서 : 손금산입 50,000,000하고 기타로 처분함.
2000년에 실제 지급시는 잉여금감액으로 하므로 비용·원가반영 안됨.
- ◎ 99년의 법인손금반영되도 실제 지급은 2000년이므로 개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근로소득귀속은 2000년분이 됨.
- ◎ 개인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시 성과배분상여금 월정금 아니고 법인손익계산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총급여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됨.
- ◎ 적용시점 : 2000년 1월 1일부터 최초 지급분 적용. 그러니까 99년 12월말 법인은 99년도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가능함.

II. 건설이자 배당금 (법 제20조제2호)

① 본 호의 개요

상법 제463조는 회사는 그 목적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시전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하는데, 주주의 불입금액(익금불산입)의 반환개념으로 보아 대응차원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기업회계상 건설이자배당금은 일단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계정으로 기재하고 개업 후 6% 이상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6%를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며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② 건설이자 배당금의 의미

법인이 철도·축항·전력·운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성립후 일정기간 이상 영업전부를 개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주식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고 한다.

다음의 시행령은 상법 제46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자만을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연 5분이 최고 한도이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② 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상 법 제463조 【건설이자의 배당】 - 2011. 4. 14 삭제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상의 배당건설이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 설립후 정상업무시까지의 배당건설이자를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개업후의 이익잉여금처분하여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자본조정】

자본조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2. 배당건설이자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로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 본】

15.17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이익잉여금 없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배당건설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향후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처분(처리)하여 상각한다.

④ 상법상의 배당건설이자

반면에 상법 제457조는 배당건설이자를 자산계정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부에 계상하고 개업 후 매년 6분 이상의 배당을 할 때마다 그 초과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같이 자본조정계정으로 하여 감액한 후 향후 매년의 이익배당액과 조정해 나감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 **상 법 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 2011. 4. 14 삭제

- ① 제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Ⅲ.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20조제3호)

①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개념과 손금불산입 계산**

현행 상법은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규정(상법 제329조제4항)하고 있는데,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거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액면 이상으로 할증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당 100원의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조달의 탄력성을 주고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미달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상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 개념과 규정

상법에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주식발행 후 3년내의 결산기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체를 손금불산입하며, 이의 상각액도 당연히 손금불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상 법 제417조 【액면 미달의 발행】

-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 미달의 기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62. 12. 12 개정)
-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 상 법 제455조 【액면 미달금액의 계상】 - 2011. 4. 14 삭제

- ①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 미달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주식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상의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의 잉여금처분항목

본 호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모두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도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그 상각액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며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족하거나 결손누적액이 많으면 나중으로 이월상각한다.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자본조정 처리】**

자본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배당건설이자는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3.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시 관련 자본계정에 대체한다.